

#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정책과장 신현주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중인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시 100% 출연기관으로 대내외적 급변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나눔 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음.
- 독립된 재단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재단은 현재 관련규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2023. 5월 이전할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가. 재단본부 사무실 이전추진

- 현재 소재지 :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, 화성종합경기타운 J3구역
- 사무실 이전 : 화성시종합경기타운 내 J3구역(166㎡) → J5구역(256.39㎡)

나. 용 도 : 사회복지재단 사무실 및 다목적회의실 등 이용

다. 전용면적 : 256.39㎡

라. 감면비율 : 100% 감면(무상 사용)

마. 감면기간 : 2023. 5. ~ 2028. 4. (5년)

#### 바.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2023. 3. 2023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
- 2023. 3.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
- 2023. 5. 사무실 이전 및 사용료 감면 통보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J5구역 256.39㎡를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%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생활보장과장 이희정)

### 가. 제안이유

-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‘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’ 과 우리 시 조례 간 대상 기준의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주민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
- 조례 일부인 “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” 에서 “다른 조례” 의 범위가 해당 지자체로 한정될 수 있어 경기도 조례로 지원되는 대상자의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가. “65세 미만일 것” 삭제하고자 함(현행 제3조제1호 삭제).

나. “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” 일부 삭제하고자 함(안 제5조제2항제1호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급을 가능케 하고, 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,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에 따라 “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저소득 가구”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과, “65세 미만의 저소득자”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의 간극을 해소하여, 노인과 비노인으로 함께 구성된 저소득 가구들이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)

### 가. 제안이유

#### ○ 추진 필요성

-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양감점 및 동탄점의 위·수탁기간이 2023년 8월 만료됨에 따라 2023. 9. 1.부터 5년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# ○ 추진 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 운영의 위탁)
- 「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- 「화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시설의 운영)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사무내용

-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프로그램 운영
-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
- 작업훈련 및 직업평가 프로그램 운영
- 통근훈련, 취미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
-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운영
-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나. 위탁시설현황

- 위탁기간 : 2018. 9. 1. ~ 2023. 8. 31.
- 수탁기관 : 사단법인 가온나래
- 시설현황

시설명	위치		생산품	종사자 (명)	2023년 예산 (천원)
2개소	합계			17	653,492
화성시아름장애인 양감점	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239		골판지	8	292,606
보호작업장 동탄점	화성시 동탄대로10길 17-12		보건용 마스크	9	360,886

○ 조직 현황

(2023. 1월, 단위: 명)

시설명	구분	계	종사자					
			시설장	사무국장	직업훈련교사	사무원	생산판매기사	운전원
화성시아름장애인 양감점	양감점	8	1	-	3	1	2	1
보호작업장 동탄점	동탄점	9	1	1	3	1	2	1

○ 이용장애인 현황

(2023. 1월, 단위: 명)

시설명	구분	계	이용장애인		장애유형					
			근로장애인	훈련장애인	지적	지체	자폐	뇌병변	정신	시각
화성시아름장애인 양감점	양감점	24	14	10	14	1	1	2	4	2
보호작업장 동탄점	동탄점	21	21	-	15	1	3	1	1	-

다. 위탁계획

- 위탁기간 : 2023. 9. 1. ~ 2028. 8. 31. (5년)
- 위탁자의 자격 :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-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
  -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수탁자 선정)
  -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
  -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2023. 6. 민간위탁 모집 공고 및 접수
- 2023. 7.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
- 2023. 8. 수탁기관 협약 체결 및 인계·인수
- 2023. 9. 민간위탁 운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동의안은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, 향후 5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꾀하는 사업인 만큼,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장수노인에 대한 연령 인식 변화에 따른 지급 연령 상향 조정 및 관내 거주기간을 지원 조건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지급 연령 상향 조정 및 거주기간 조건 변경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지급 중지 조건 명확화(안 제6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들의 연령기준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상향조정하고, 거주기간의 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,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급중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,
- 검토결과,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장수수당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반면, 장수수당의 수혜대상 감소로 절감되는 예산은 향후 현실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, 지급중지 사유의 추가적인 명시를 통해 중복 또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산의 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위생정책과장 이양노)

### 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추모공원의 사용기간 연장 시 자격기준 및 감면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설 묘지의 지적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여 화성시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화성시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 시 자격기준 구체화(안 제20조제1항제1호 라목 신설)
- 나. 화성시추모공원 사용료 및 감면기준 구체화(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4항 신설, 안 별표 2 개정, 안 제28조제5항 신설)
- 다. 공설묘지 지적 불부합 요소 개정(안 별표 3 개정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용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, 화성시추모공원 사용기간을 기존 10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15년 단위로 1회 한정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, 사용기간 연장 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제외시키고, 공설묘지의 소재지 및 면적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,
- 화성시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을 축소함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시민들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, 설치기간 또는 사용기간 연장 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하여 감면기준을 배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,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누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향후 시행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9. 김미영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미영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.
- 나아가 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취약예술계층에게는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려는데 제정 취지가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등 (안 제5조)
- 나.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다. 취약예술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 「예술인 복지법」을 구체화하여, 관내 거주하는 예술인과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범위를 명문화하고,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과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서,
-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예술인의 복지지원과 창작활동을 증진하고, 중요한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화성시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9. 김상균 의원 등 7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상균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한시법으로 화성시립미술관 개관일까지 필요한 작품 수집과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범적인 사항을 담으려는데 제정의 취지가 있음.
- 나아가 소장 작품의 수준을 제고하고 작품 수집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심의위원회를 이원화하여 별개의 심의기구로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작품수집 계획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- 나.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- 라. 조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(안 부칙 제2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건립추진을 위해, 위원회와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서,
- 화성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인 만큼,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수준 높은 미술작품의 수집이 필수적인 요소인바, 본 조례안이 그 기초적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수정안 요지 : 안 제2조제2항 후단의 <문화인류학적 연구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한다.> 를 <문화인류학적 연구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> 로 하고,  
안 제14조제2항 후단의 <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.> 를 <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> 로 수정가결

※ 수정대비표 별첨

8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(별첨) 수정 대비표**

-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

수 정 전	수 정 후
<p>제2조(작품수집계획 등)</p> <p>② 작품수집은 화성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역사, 문화,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<b>한다.</b></p>	<p>제2조(작품수집계획 등)</p> <p>② 작품수집은 화성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역사, 문화,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<b>할 수 있다.</b></p>
<p>제14조(심의기구의 구성)</p> <p>②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 전문가로서 미술 관련 대학·학회·법인·단체 또는 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<b>사람으</b> <b>로 한다.</b></p>	<p>제14조(심의기구의 구성)</p> <p>②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 전문가로서 미술 관련 대학·학회·법인·단체 또는 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<b>사람을</b> <b>우선으로 할 수 있다.</b></p>